

예산총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2,644,600	10,579,338
일반회계	298,048,331	8,941,450
특별회계	54,596,269	1,637,888
공기업특별회계	18,899,330	566,98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899,330	566,980
기타특별회계	35,696,939	1,070,908
주택사업특별회계	9,000	270
의료보호특별회계	629,854	18,896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969,879	59,096
장학사업특별회계	8,459,423	253,78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16,703	9,5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60,387	16,812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76,551	32,297
수질개선특별회계	22,675,142	680,25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 당 없 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09,380천원으로 한다. 예비비는 재난상황시 재난지원금에 우선 사용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